

- ▶ 보도일시: 2013.2.28(목) 조간
<인터넷 2.27(수) 12:00 이후>
- ▶ 총 4 쪽

❖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팀 장 김충모
서기관 함병호
☎ 02-6922-0960, 010-9488-219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, 30여년만에 전면 개선 - 산재취약사업장은 사업주를 교육, 서비스업 신규채용자는 안전교육 후 작업 투입,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성 향상 등 -

-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전면 개선된다.
- 안전보건교육은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많은 재해는 교육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.
 - * ‘11년 사망재해자(조사대상 1,196명) 중 61.1%(731명)가 교육을 통해 예방 가능한 작업절차 미준수, 보호장구 부적절 및 작업자 실수 등으로 발생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간 안전보건교육은 규제완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기도 하면서, 교육의 내용·방법 등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.
 - * ‘97년에 「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 면제, ‘07년에 동법 개정으로 부활
-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사업장, 교육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,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.

- 금번 개선방안은 안전교육이 산재예방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하고, 사업주와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,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산재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실시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
- * 재해조사 또는 감독결과 강평 때 사업주 교육용 동영상 시청토록 하고, 안전보건 설문조사 실시

② 관리감독자 교육을 ‘직무교육’으로 변경

- 현재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·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자와 동일한 ‘사업내교육’ 대상으로 규정
- 따라서 관리감독자로서 산재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도록 ‘직무교육’ 대상으로 변경
- * ‘직무교육’은 외부 직무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수강이 가능

③ 근로자교육(사업내교육)의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제고

- 근로자들이 속한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**현장교육을 강화**
- 그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**현장부서 단위의 작업전 5~10분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**하여 안전교육의 현장성을 제고
- 특히, 교육대상(38개 위험작업)의 교육시간이 과도(1개작업당 16시간)한 ‘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’은 여러 작업의 공통과정을 1회만 수강하도록 하여 중복되는 내용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

④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시 교육 신설

- 서비스업 비중 증가에 따라 재해자가 급증하고, 추락·협착·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으로 교육이 절실하나 그간 서비스업 근로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었음

- 따라서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규 채용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 방법을 작업투입 전에 1시간 이상 교육
- * 서비스업은 사업장 휴·폐업이 빈번하고 근로자 이동률이 높아 신규 채용시 교육이 필요

⑤ 재해예방전문기관* 종사자 교육 자율화

- 민간기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법정 강제교육으로 실시하여 타당성에 논란이 있어 온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변경
- * 건설공사 수급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·산재예방 조치방법 등을 지도하는 업무수행, 현재 약 80여개 지도기관에 총 547명 종사

⑥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프라 강화

- 교육기관을 실습·훈련 중심의 실무형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대형화·전문화를 통해 영세성을 탈피하도록 기관간 컨소시엄을 허용
 - 산업안전보건공단에 「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센터」를 설치하여 사업장 및 교육기관의 교육 지원기능을 강화
 - * 교육수요 파악, 교육프로그램 개발, 인터넷 교육 플랫폼 구축, 교육자료 개발, 교육기관 평가 등
 - 사업장의 자율 안전교육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, 감독방법을 ‘문서확인’에서 ‘성과측정’ 방식으로 개선
-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, 교육교재 및 현장학습모델 마련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,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.
-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“산업안전보건교육이 3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선되는 만큼,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 함병호 서기관(☎ 02-6922-0961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

현행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요

□ 교육종류 · 대상

- (사업내 교육) 사업장내 일반근로자를 대상, 사업장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
- (직무교육) 사업장내 조직상 직책을 가진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,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시

구분	교육구분	교육시간	방법	교육강사	교육내용(교재)
사내교육 (31조)	신규채용시	8h(일용 2h)	▶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 실시 ▶ 사내 인터넷 교육	▶ (자체) 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보건관리자, 강사과정 이수자, 지도사, 강사교육 이수자 ▶ (위탁) 위탁·대행기관, 비영리법인, 훈련기관	▶ 대상별 교육내용을 별도로 규정 ▶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 ※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교육자료 편집 사용
	정기교육	6h/분기 (사무/판매직 3h)			
	작업변경시	2h(일용 1h)			
	특별교육	16h			
	관리감독자	16h/년			
직무교육 (32조)	관리책임자	신규 6h, 보수 6h/2년	▶ 직무교육기관	직무교육기관 강사	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무교육교재 제작 배포 ※ 기관별로 재편집
	안전보건관리자	신규 34h, 보수 24h/2년	▶ 인터넷(법정교육시간의 2/3 이내, 관리책임자는 전체)		
	재해예방기관종사자	보수 24h/2년			

□ 교육기관

- (사내교육기관)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교육을 위탁 받아 실시

※ 법 제3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의10 : ①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② 비영리 법인 또는 안전보건대행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석면조사기관 ④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건강진단기관 ⑥ 면허교육기관 ⑦ 안전보건진단기관 ⑧ 산업안전보건공단 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⑩ 안전보건관련학과 설치대학

- (직무교육기관) 안전·보건관리책임자, 안전·보건관리자, 재해예방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

※ 법 제32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의14: ① 산업안전보건공단 ② 산업안전협회 ③ 산업보건협회 ④ 산업간호협회 ⑤ 산업위생학회 ⑥ 건설안전기술협회 ⑦ 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⑧ 인천대 산학협력단 ⑨ 건설기술교육원 ⑩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⑪ 중앙안전보건협회('11. 12월 현재)

*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터넷 교육만 실시(인터넷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, 안전협회만 실시)